

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1280호
- 발 의 자 : 문병훈 의원(찬성자 10명)
- 발의일자 : 2020년 2월 5일
- 회부일자 : 2020년 2월 12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, 야외운동기구 안내문의 게시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의 예방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안내문 훼손방지를 위한 관리부서장의 의무를 규정함(안 제7조제2항).
- 나. 안내문 훼손 시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부서장의 의무를 규정함(안 제7조제3항).
- 다. 안내문 부착 내용의 별표를 신설함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는 서울시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2019년 제정되었음.
- 현행 조례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기준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하는 한편 야외운동기구에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,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 시설 안내문의 형식을 구체화하여 별표에 명시하고 있는 바,

〈안 내 문〉

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	
관리번호	
기구명	
설치년월일	
관리부서	
연락처	

이를 통해 관리자는 물론 시민들이 설치연월일, 관리부서 등을 잘 볼 수 있어서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,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효율적

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.

- 신설되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함은 물론 훼손된 경우 곧바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는 바, 이를 통해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함은 물론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 사료됨.

〈신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안내문 게시)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7조(안내문 게시 등)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
<p>제8조(안전점검 등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8조(안전점검 등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정기점검과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